

예산총칙

202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481,488,140	44,444,644
일반회계	1,354,528,942	40,635,868
특별회계	126,959,198	3,808,776
공기업특별회계	80,779,575	2,423,38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167,266	1,355,01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612,309	1,068,369
기타특별회계	46,179,623	1,385,389
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848,415	25,45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97,312	161,919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7,347,253	220,418
주택사업특별회계	42,039	1,2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68,300	14,049
공업용지조성사업위수탁특별회계	15,974,000	479,220
주차장특별회계	16,055,460	481,664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46,844	1,40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274,446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8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